

2013. 12월 심의결정 통계

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·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임시중지 명령요청
기초재							
식품·음료	13		13				
가정용품	1			1			
제약(의료기기)	9		2		7		
건강관련용품	8		6	2			
화장품·세제	16		16				
일반산업기기							
정밀사무기기							
전기·전자							
수송기기							
화학·공업							
건설·건재	4		4				
출판·교육							
의류·섬유	2		2				
유통	5		5				
금융·보험·증권							
서비스·오락	1			1			
관공서·단체							
의료	10				10		
그룹·기타							
계	69		48	4	17		

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
공정성 · 윤리성 · 합법성 · 인간의 존엄성 · 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69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
광고주 불표시(9조)	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59
주장의 무입증(11조)	47
추천, 보증(12조)	5
배타적인 광고(14조)	
자료 등의 인용(15조)	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
소비자 조사(20조)	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
어린이 · 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
경품 · 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13
주류 · 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
효능효과 과신 · 과장(34조)	12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15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19
금융 · 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6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4
영화 · 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
기타	
계	249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